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가보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90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방식) 법 제12조제2항

제3호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5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3(보훈보상대상자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방식)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중복적으로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u> <u>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u> <u>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u> <u>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u> <u>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와 그 가구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u> <u>5.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u>

	<u>호에 따른 수급자</u> <u>6.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u> <u>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연 락 처	(044) 202 - 5442